파주시공고 제2022-357호

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담금 최소 부과 기준 및 가산금 부과율을 정비하고,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시행규칙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통일 (안 제4조 외)

나. 부담금의 가산금 비율 수정 (안 제29조)

다. 부담금 부과 최소금액 변경 및 가구별 요금조정 적용내용 신설 (안 제18조)

라. 공증의무 명시 내용 삭제 (안 제14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2년 3월 7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환경보전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463 / 팩스 031-940-4459 / 이메일 kimhk0620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